

2020년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



기획담당관

2020년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

1. 개요

- 주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·공정성을 제고

2. 추진배경

□ 추진목적

-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, 기회 확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
- 주민참여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, 책임성, 공정성 제고

□ 추진근거

- 지방재정법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-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【주민의견서 수렴내용】 첨부 의무화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
-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

□ 추진방향

-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의 참여(사업제안, 심사, 선정 등)를 보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 운용
- 주민공모형 및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의견반영으로 예산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, 예산학교 운영 및 위원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

3. 문제점 및 대책

- 주민 제안건수, 반영률 감소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민의 부정적 시각 증대

▶ 반영률 제고를 위한 **사전 컨설팅 시행** 등으로 양질의 사업 발굴 및 **홍보 강화, 교육실시(예산학교운영)**로 시민의식 개선에 앞장

- 지역개발 공모사업, 주민제안사업 등에 대한 이해 및 홍보 부족과 짧은 모집기간은 내용부실로 이어져 사업제안 구체성 결여, 설득력 부족 등으로 부서 타당성 검토 및 위원회 심의통과 어려움

▶ 공모사업 등 모집공고 기한 **앞당겨 추진(4월 공모)**, 읍면동장 회의, 홈페이지 게재, **주민참여예산 제안(공모)사업 안내표시** 등 **홍보강화**, 부서 검토시 자문단 (**사전 컨설팅- 별도계획**) 운영, **심시기준 보완** 양질의 사업 발굴 선정

-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 근거 시민이 제안하고 의결한 주민제안 사업예산안이 의회 의결을 득하지 못해 **예산심의시 삭감**되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에 역행

▶ 선정된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타당성 등 **의회에 적극적 대응** 강화

- 주민주도형(읍면동 지역개발 공모사업)의 경우 **운영한도, 운영 방법, 선정주체(사업한도-2억내,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발굴, 주민자치위원회 선정)**를 한정함으로써 **특정단체 예산으로 인식**하는 모순 발생

▶ 읍면동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**한도제한 폐지**하고 읍면동에서 지역실정에 맞춰 우선순위로 발굴된 사업을 **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**에서 선정

- 주민 제안(공모)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시민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전무하고, 주민참여예산 성과를 나타낼 수 없음

▶ 제안(공모)자의 자긍심 고취와 **시민 관심도를 높이고**, 주민 제안(공모)사업으로 시행됨을 표시(**표지판, 문구게재**)로 주민참여예산 성과와 홍보효과 거양

4. 2020년 추진계획

①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추진

□ 모니터링 운영

- 추진기간 : 2020. 4월 ~ 11월
- 추진대상
 - 2018년 지역개발 공모 선정사업 : 6개, 1,091백만원
 - 2019년 지역개발 공모 선정사업 : 2개, 125백만원
- 모니터링단 구성 : 10명 내외(분과위원회별 선정)

□ 모니터링 추진계획

- 추진방법
 - 모니터링단 :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선정
 - 상반기 : 주민참여예산 이월사업 등 현장 확인 및 서면검토
 - 하반기 :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현장 확인 및 서면검토
- 활동결과
 - 평가보고서에 따른 실비보상

② 주민 제안(공모)사업 사전 컨설팅제 운영

신규사업

□ 사전 컨설팅단 구성

- 예비자문 신청 : 주민 제안(공모) 접수후 부서 의견 수렴 전 신청서 작성요령 등 사업내용 예비 컨설팅(신청에 의함)
 - 예비자문단
 - (제안사업) 분과위원회 위원중 직업, 경력 등 반영 구성(2~3인 이내)
 - (공모사업) 읍면동 담당직원
 - 접수된 모든 제안(공모)사업에 대한 신청서 작성요령 예시기준에 의한 예비자문

○ 전문 컨설팅 : 제안사업에 대한 법적 타당성, 사업비 산출근거 명확성, 실현 가능성, 유관기관 협조여부 등 사업내용 구체화 컨설팅

- 전문 컨설팅단(3인~5인) : 사업별 업무담당 직원 + 예비자문단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결사업 차기 회의개최 전 보완 컨설팅

□ 사전 컨설팅단 추진

- 운영기간 : 4월 ~ 11월
- 운영방법 : 분과위원회별 제안사업에 맞춘 자문단 구성
- 운영지원 : 활동보고에 따른 실비보상
- ※ 컨설팅단 참여자(사업별 업무담당 직원)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(실적가산점, 국외연수 우대 등)방안 강구 - 추후 논의

3 주민 제안(공모)사업 안내표식 설치 신규사업

□ 주민 제안(공모)사업 안내표식

- 필요성
 - 주민 제안(공모)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의 성과임을 주지
 - 시민홍보 효과, 시민 관심 및 시정참여 활성화 유도
- 행사성 사업 : 인쇄, 홍보물, 현수막 등 제작 주민참여예산사업임을 표시
- 시설물 사업 : 표지판 설치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임을 표시

□ 주민제안사업 안내표식 설치대상

- 행사성 사업 : 예산범위내 행사전 홍보물, 현수막 등 설치

사업명	소요예산	소관부서	비고
스터디카페 진로프로그램 운영	70,000	여성가족과	2020년 예산
동아리지원 활성화	6,000	여성가족과	
예체능 관련 프로그램 확대	170,000	여성가족과	
철화분청사기 주민체험	75,000	문화체육과	
행복나눔 은행나무길 음악회	20,000	건설과	

○ 시설물 사업 : 예산범위내 준공전 표지판 설치

사 업 명	소요예산	소관부서	비 고
금 남 정 맥 등 산 로 정 비	50,000	산 림 경 영 과	2020년 예산
버 스 정 류 장 의 자 설 치	15,000	교 통 과	
흡 연 부 스 설 치	60,000	문화시설사업소	
4 계 절 꽃 길 조 성	38,000	건 설 과	
제 민 천 주 변 포 토 존 설 치	10,000	건 설 과	

4 주민 제안(공모)사업 심사기준 강화 신규사업

□ 주민제안(공모)사업 심사기준 설정

○ 필요성

- 사전 심사기준 강화로 공모 반영비율, 예산 반영비율 제고
- 의회 예산 심의시 일부사업 적정성 여부로 예산삭감 대비

○ 불가사업 심사기준

- 법령에 위반, 시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
- 국고보조사업, 국가직접사업, 계속사업
- 기설치 운영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등 신규 또는 증액요구
- 특정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
- 사업체가 특정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제안한 사업
-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원 사업
-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이 포함된 사업(민간보조사업)
- 시 공공청사(주민센터 등) 기능보강사업 등
- 시 전체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는 도로건설 사업(도로파손 정비, 보도정비 사업 등)
- 생산성이 없는 소모성 마을단위 축제·행사성 사업
- 특정 개인·단체의 이익을 위한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
- 시설 용벽 등 벽화그리기 사업
-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
- 타 기관(경찰서, 소방서, 교육청 등) 소관 사업

5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

- 주민 의식개혁,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대상 교육
 - 주민참여예산위원, 읍면동 지역위원 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자치위원, 리통장, 지도자, 주민 등 대상으로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(년중 운영)
 -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강좌 개설(도민참여예산제 운영)시 본청, 읍면동 담당직원 우선 교육
 - 읍면동 권역별 교육 수요조사 후 전문 위탁교육 또는 강사 지원 요청(충남도 예산학교 활용)
-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우수 자치단체 운영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
 - 일반 시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
 -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배양
-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예산학교 교육이수 의무화(1년 2시간)로 예산학교 실질화

6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

- (목적) 청소년 요구 및 필요에 의한 사업예산 제안부터 운영까지 청소년 정책참여기회를 제공하고, 청소년 시각의 제안목적에 맞춘 예산의 적정성을 담보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 마련
- (대상)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 28명
- (주요내용) 청소년참여위원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청소년 정책사업 발굴 제안 등
- (추진방법)
 - 청소년참여위원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사업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(예산학교 활용) 실시
 - 청소년참여위원회 논의 후 발굴사업 제안서 제출
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제안사업 발표
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 청소년참여위원 배석
 - 수업참여 등으로 제안발표 및 총회 미참석 시 의견제출로 갈음

7 주민참여예산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

- (조사시기) 11월중
- (조사목적) 연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피드백
- (조사방법) 총회 개최시 직접 및 우편 설문조사
- (조사대상) 주민참여예산위원 53, 청소년참여위원 28
- (조사내용)
 -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인식도, 참여도
 -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
 -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시 고려사항 및 역기능 등

5. 세부 추진계획

1 주민참여예산 현황

참여 방법	주민 參與형		주민 主導형	
	① 시민제안 사업공모	② 예산案에 대한 의견수렴	③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	④ 읍면동 지역개발 사업 공모
제안 주체	공주시민	사업부서 예산요구	지역주민 건의	지역주민 제안
운영 방법	시민공모	분과위원회 의견수렴	지역위원회 우선순위 결정	읍면동
운영 한도	한도액 없음	-	읍면동별 4~6억 범위내	읍면동별 2억 범위내
선정 절차	- 시민제안 - 부서검토 - 분과위 선정 - 총회상정	- 부서 예산요구 - 부서 사업설명 - 분과위 의견 - 총회상정	- 대상지 조사 - 한도액내 우선순위 결정	- 주민사업발굴 - 제안서 제출 - 총회설명 후 투표 선정
선정 주체	분과위원회	분과위원회	지역위원회	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

2 주민제안사업 공모

○ 대상사업 :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

※ 제외대상(불가사업 심사기준 참고)

- 민간보조사업 ⇒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
-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⇒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결정, 읍면동으로 건의
- 타 기관 소관업무(교육청, 경찰서 등)
- 특정단체만의 지원 또는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등

○ 참여대상 : 공주시민 누구나

○ 운영일정



○ 인센티브 제공 : 「공주시 제안제도운영조례 및 시행규칙」에 의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표창 및 상금 제공

3] 사업부서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

- 대상사업 : 2021년 예산안(시 자체사업) 중 1억원 이상의 시설 투자사업 및 생활 SOC사업에 대한 의견수렴
- 의견수렴 방법
 - 분과위원회 별로 해당 부서 팀장이 사업설명, 필요시 현장견학
 - 각 분과별 사업설명 청취 후 사업별 적정여부 의견수렴
 - 분과위원회 의견 수렴 ⇨ 주민참여위원회 총회 상정

4]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, 우선순위 자율결정

- 대상사업 : 농로·마을안길 포장, 농·배수로사업, 체육시설지원, 공동주택 지원, 경로당 물품지원 등
- 운영한도
 -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: 읍면동 규모에 따라 4~6억원 한도 내
 - 경로당물품지원 : 경로장애인과 지원 기준에 따름
 - 공동주택 지원 : 허가과 지원 기준에 따름
- 운영일정 : 읍면동별 자체계획 수립하여 지역위원회 운영



5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공모

- 대상사업 : 지역발전사업, 경관개선사업, 소득창출사업, 특화사업 등
 -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읍면동에서 발굴
- 운영한도 : 공주시 읍면동 사업별 2억원 내외
- 운영일정 : 읍면동별 자체계획 수립하여 지역위원회 운영



6. 추진일정

과 제 명	주 요 내 용	일 정
운영계획 수립·보고	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▶ 20년 운영계획 보고	20. 3.
주민 제안 사업 공모	주민 제안사업 공모 실시	20. 4.
예산위원회 총회 개최	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및 예산학교 운영 ▶ 19년 운영결과 보고, 20년도 운영계획 보고 ▶ 예산학교 운영	20. 4.
사전 컨설팅	전문컨설팅단 구성 ▶ 분과위원별 구성, 사업담당자 등	20. 5.
분과위원회	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▶ 주민 제안(공모)사업 의결 ▶ 분과별 해당 자체사업에 대한 의견제출	20. 5.
전문 컨설팅	전문컨설팅단 ▶ 분과위원회 보류 사업대상 등 재검토	20. 7.
예산학교 운영	예산학교 운영 ▶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참여예산제도 설명	20. 8.
분과위원회	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▶ 지역위원회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의결 ▶ 분과별 해당 자체사업에 대한 의견제출	20. 10.
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총회	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▶ 지역위원회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의결 ▶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보고 및 상정안건 의결	20. 11.
예산편성(안) 및 주민의견서 제출	예산편성(안)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제출 ▶ 2021 예산편성(안) 및 주민제안사업 예산안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제출	20. 11.
예산안 의결	예산안 심의 및 의결(시의회) ▶ 시의회(예결위, 본회의) 예산안 심의 의결 ▶ 의결기한 :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	20. 12.

※ 읍면동 지역위원회는 읍면동별 자체 계획 수립하여 운영